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11월 15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9일
-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 '19. 12. 31.)에 따른 안전 기준 예외에 대한 규정과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을 조례로 정하고, 국민의 배출 편의 개선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 및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의 예외 규정 (안 제8조의2)
 -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중 재활용가능 자원에 배출방법 및 품목별 배출요령 규정 (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별표 7)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기한 개정 (안 제27조제3항)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 세분화 (별표 3)
- 자구수정 (안 제2조제6호, 안 제13조제1항, 안 제27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 '19. 12. 31.)에 따른 안전 기준 예외 사항과 재활용가능 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 규정하고, 국민의 배출 편의 개선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 및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8조의2에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9조와 안 별표 7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훈령)」이 개정(2020. 8. 24.)되어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이 추가된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7조에서는 정확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기한을 명시하였으며,
- 안 별표 3에서는 대형폐기물의 다양화에 따른 배출신고의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품목 신설 및 규격을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에 대하여 우리 구 작업환경에 맞는 예외사유를 마련하였으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따라 재활용가능 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을 현행화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의 품목 신설 및 규격을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의 다양화에 따른 배출 신고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여 주민의 배출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21 호
----------	---------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 '19. 12. 31.)에 따른 안전 기준 예외에 대한 규정과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을 조례로 정하고, 구민의 배출 편의 개선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 및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관리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의 예외 규정(안 제8조의2)
- 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중 재활용가능 자원에 배출방법 및 품목별 배출요령 규정(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별표 7)
- 다.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기한 개정(안 제27조제3항)
- 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 세분화(별표 3)
- 마. 자구수정(안 제2조제6호, 안 제13조제1항, 안 제27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1. 10. 14. ~ 11. 3.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페스치로폼**”을 “**페스티로폼**”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전기준의 예외) 규칙 제16조의3제2항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짐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성폐기물**”을 “**민원성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형폐기물 :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출 신고한 후, 신고한 일시·장소에 배출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 : 별표 7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품목·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재활용가능품**”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재활용가능품**”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배출 취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이 이미 수거 되었거나, 신고한 배출예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다.

별표 3,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제품류	1	자동판매기	음료·담배	14,000
	2		자가·소형	5,500
	3	TV	42인치 이상	6,000
	4		25인치 이상	3,600
	5		25인치 미만	3,000
	6	가스레인지		2,500
	7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800
	8		높이 1m 미만	2,400
	9	게임기·오락기	업소용	10,000
	10		50cm 이상	5,000
	11		50cm 미만	3,000
	12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3,000
	13		높이 1m 미만	면제
	14	냉장고·김치냉장고	업소용	15,000
	15		700L 이상	13,000
	16		500L 이상	9,500
	17		300L 이상	4,800
	18		300L 미만	3,000
	19	에어컨 실외기	높이 1m 이상	2,000
	20		높이 1m 미만	면제
	21	에어컨	264㎡ 이상	9,000
	22		66㎡ 이상	6,000
	23		66㎡ 미만	4,000
	24	온풍기	264㎡ 이상	8,500
	25		66㎡ 이상	5,500
	26		66㎡ 미만	3,500
	27	복사기(영업용 프린터)	업소용	9,500
	28		높이 1m 이상	5,000
	29		높이 1m 미만	면제
	30	환풍기	업소용	2,500
	31		가정용	면제
	32	세탁기·건조기	20kg 이상	7,000
	33		10kg 이상	5,000
	34		10kg 미만	3,600
	35	식기건조기	높이 1m 이상	3,500
	36		높이 1m 미만	면제
	37	식기세척기	높이 1m 이상	3,500
	38		높이 1m 미만	면제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제품류	39	정수기	높이 1m 이상	5,000
	40		높이 1m 미만	면제
	41	온수기	높이 1m 이상	2,000
	42		높이 1m 미만	면제
	43	오디오본체	높이 1m 이상	5,000
	44		높이 1m 미만	면제
	45	세단기	높이 1m 이상	4,500
	46		높이 1m 미만	면제
	47	전자시계		면제
	48	선풍기	가정용	면제
	49	DVD,비디오(VTR)		면제
	50	오디오 스피커		면제
	51	전자레인지		면제
	52	전기밥솥·보온밥솥		면제
	53	전화기·휴대폰		면제
	54	청소기		면제
	55	카세트 라디오		면제
	56	커피포트		면제
	57	헤어드라이어		면제
	58	컴퓨터(본체,모니터)		면제
	59	컴퓨터 복합기		면제
	60	전기 비데		면제
	61	컴퓨터 키보드		면제
	62	탈수기		면제
	63	토스터기		면제
	64	팩시밀리		면제
	65	휴대폰 충전기		면제
	66	스캐너		면제
	67	프린터		면제
68	가습기		면제	
69	노트북 컴퓨터		면제	
70	녹즙기		면제	
71	다리미		면제	
72	모뎀		면제	
73	믹서기		면제	
74	전기히터		면제	
75	카메라		면제	
76	프로젝터		면제	
77	안마기		2,000	
78	안마의자		10,000	
79	발마사지 기계		4,0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가구류	80	TV 받침대	길이 120cm 이상	5,000
	81		길이 120cm 미만	3,000
	82	화장대	거울, 의자별도	3,600
	83	거울	1㎡ 당	2,000
	84		1㎡ 미만	1,000
	85	의자	3인용	6,000
	86		2인용	4,500
	87		1인용	3,000
	88		좌식의자	1,000
	89		바퀴 달린 의자 (대형)	5,000
	90		바퀴 달린 의자 (소형)	3,000
	91	쇼파(안락의자)	4인용	10,000
	92		3인용	7,500
	93		2인용	6,000
	94		1인용	3,000
	95		스툴	2,500
	96	서랍장	5단 이상	5,000
	97		4단 이하	3,000
	98	신발장	높이 1.5m 이상	4,000
	99		높이 1.5m 미만	3,000
	100	장롱	가로 120cm 이상	17,900
	101		가로 90cm 이상	11,900
102	가로 90cm 미만		7,000	
103	스탠드 옷걸이		2,000	
104	비닐 옷장		2,000	
105	행거	2단 행거	3,000	
106		1단 행거	2,000	
107	진열대·선반(목재,철재)	1㎡ 당	3,000	
108	캐비닛	90cm × 180cm	4,000	
109		4단 이상	3,600	
110		3단 이하	2,400	
111	장식장	높이 180cm 이상	10,000	
112		높이 120cm 이상	5,500	
113		높이 120cm 미만	4,000	
114	찬장	폭 130cm 이상	10,000	
115		폭 120cm 이상	7,000	
116		폭 90cm 이상	4,000	
117		폭 90cm 미만	3,500	
118	싱크대	상판길이 120cm 이상	6,000	
119		상판길이 120cm 미만	4,000	
120		상판(대리석) 120cm 이상	12,000	
121		상판(대리석) 120cm 미만	10,000	
122	개수대		4,0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가구류	123	식탁	6인 이상	5,000
	124		4인 이하	4,000
	125		2인 이하	3,000
	126	대리석 식탁	6인 이상	12,000
	127		4인 이하	8,000
	128	대리석 상판	6인 이상	8,000
	129		4인 이하	5,000
	130	탁자	협탁	2,000
	131		응접탁자	2,000
	132		2인용	3,000
	133	회의용 탁자	10인용 이상	9,000
	134		10인용 미만	6,000
	135	교자상·밥상	4인 이상	2,500
	136		3인 이하	1,000
	137	책상(유리별도)	서랍 없음	3,000
	138		길이 120cm 이상	5,000
	139		길이 120cm 미만	3,000
	140		편수(한쪽서랍)	5,000
	141		양수(양쪽서랍)	8,300
	142		H형 책상 (상판, 책장, 서랍포함)	10,000
	143		독서실 책상	5,000
	144		책상 상판	2,000
	145	유리	1㎡ 당	2,000
	146	책장	90cm × 180cm 이상	9,000
	147		90cm × 180cm 미만	5,000
	148		3단 이하 (길이, 높이 100cm 이하)	2,000
	149	탁상용 책꽂이	1단 당	1,000
	150	침대	2인용 세트	16,000
	151		1인용 세트	12,000
	152		2인용 매트리스(라텍스)	8,000
	153		1인용 매트리스(라텍스)	6,000
	154		2인용 침대틀	8,000
	155		1인용 침대틀	6,000
156	2인용 접이식		10,000	
157	1인용 접이식		7,000	
158	쇼파 겸용 침대		13,000	
159	의료용 침대		12,000	
160	돌침대(옥·황토 침대)		2인용 돌 옥 황토	30,000
161		1인용 돌 옥 황토	25,000	
162	침대 헤드	2인용 이상	3,000	
163		2인용 미만	2,0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가구류	164	렌지대 수납장		4,000
	165	문갑		3,600
	166	문짝	1개당	2,000
	167	병풍	2폭당	1,000
	168	창문	1㎡ 당	2,000
생활용품류	169	가방(캐리어)	골프채 가방	3,000
	170		높이 50cm 이상	2,500
	171		높이 50cm 미만	1,500
	172	빨래 건조대	길이 1m 이상	2,000
	173		길이 1m 미만	1,000
	174	식기 건조대		1,000
	175	다리미판		1,000
	176	도마	업소용	2,000
	177		가정용	1,000
	178	항아리	높이 50cm 이상	2,000
	179		높이 50cm 미만	1,000
	180	화분	높이 50cm 이상	1,500
	181		높이 50cm 미만	1,000
	182	쓰레기통	사무실·옥외용	2,000
	183		가정용	1,000
	184	게시판(화이트보드)	가로 1m 이상	2,000
	185		가로 1m 미만	1,000
	186	액자	높이 1m 이상	3,000
	187		높이 50cm 이상 ~ 1m 미만	2,000
	188		높이 50cm 미만	1,000
	189	어항(수족관)	가로 1m × 높이 60cm 초과	6,000
	190		가로 1m × 높이 60cm 이하	4,000
	191	장판	3.3㎡ 당	1,000
	192		전기장판(2인용)	3,000
	193		전기장판(1인용)	2,000
	194		옥, 자석, 온수 장판 (2인용)	7,000
	195		옥, 자석, 온수 장판 (1인용)	4,000
	196		카펫	3.3㎡ 당
	197	발판매트		1,000
	198	자석매트	매트리스 가격 준용	동일
199	이불	겨울용(솜이불)	2,000	
200		여름용	1,000	
201	토퍼(요)	2인용(두께 10cm 이하)	6,000	
202		1인용(두께 10cm 이하)	4,000	
203	뒹자리(대자리)	1㎡ 당	1,000	
204	방석	겨울용	1,000	
205		여름용	5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생활용품류	206	베개(라텍스 베개)		1,000
	207	블라인드(자바라)	1㎡ 당	1,000
	208	커튼	1㎡ 당	1,000
	209	커튼봉		1,000
	210	재봉틀		2,500
	211	벽시계	길이 1m 이상	2,500
	212		길이 1m 미만	1,000
	213	조명기구(모든규격)	폭, 높이 1m 이상	2,000
	214		폭, 높이 1m 미만	1,000
	215		상들리에	2,000
	216	형광등 틀		1,000
	217	자전거	성인용	3,600
	218		아동용 2륜	3,600
	219		아동용 3륜	2,400
	220	킥보드		2,000
	221	테니스 라켓	개당	1,000
	222	배드민턴 라켓	개당	500
	223	골프채	개당	2,000
	224	등산스틱		1,000
	225	아령	1kg 당(가정용)	500
	226	텐트	4인용 이상	4,000
	227		4인용 미만	3,000
	228	헬스기구	런닝머신(수동)	15,000
	229		헬스자전거	7,000
	230		스텝퍼	4,000
	231		شط업보드	4,000
	232	탁구대		7,000
	233	볼링공		3,000
	234	스키	스키(부츠별도)	3,000
	235		스키부츠	2,000
	236	스케이트	1켤레	2,000
	237	스노우보드		3,000
	238	피아노	일반	17,900
	239		디지털	5,500
240	오르간	일반	4,800	
241		전자식	3,000	
242	악기	기타, 바이올린 등	2,000	
243	바둑판	두께 60mm 이상	2,000	
244		두께 12mm 이상	1,000	
245	우산	일반용	1,000	
246	파라솔	모든 규격	2,000	
247	신발	1켤레	5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생활용품류	248	대걸레(빛자루)	1개당	1,000
	249	욕실 수납장	1㎡ 이상	4,000
	250		1㎡ 미만	3,000
	251	세면대		3,000
	252	욕조	일반용	6,000
	253	변기		4,500
	254	난로	석유난로	2,500
	255		가스난로	2,500
	256		전기난로	면제
	257	수도호스	10m 당	1,000
	258	보일러	16kcal/h 이상	10,000
	259		16kcal/h 미만	7,500
	260	보일러 기름 탱크		2,000
	261	물탱크	1톤당	14,000
	262		0.5톤 이상	6,500
	263		0.5톤 미만	3,000
	264	아이스박스	50L 이상	3,000
	265		30L 이상	2,000
	266		30L 미만	1,000
	267	배기후드		2,000
	268	고무통	지름 1m 이상	5,000
	269		지름 50cm 이상	3,000
	270		지름 50cm 미만	2,000
	271	쌀통		3,600
	272	드럼통		5,000
	273	죽부인		1,000
	274	평상	1.5m × 1.5m 이상	7,000
	275		1.5m × 1.5m 미만	5,000
	276	컬러박스(공간박스)	3단 이상	2,000
	277		2단 미만	1,000
	278	CD꽃이		2,000
	279	체중계	가정용	1,000
	280	전기 판넬	3.3㎡당	2,000
	281	휠체어		3,000
282	개집		3,000	
283	켓타워	높이 1m 이상	5,000	
284		높이 1m 미만	3,000	
285	금고(가정용)	가장 긴면 1m 이상	8,000	
286		가장 긴면 1m 미만	5,000	
유아용품류	287	유아용 식탁의자	하이체어	3,000
	288	유아용 의자(쇼파)	1인용	1,000
	289	아기 옷장		3,000
	290	유아용 침대		3,000
	291	유아용 매트리스		3,000
	292	어린이 2층 침대		15,000
	293	인형(대형)	1개당	2,0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유아용품류	294	장난감	길이 50cm 이상	2,000
	295		길이 50cm 미만	1,000
	296	놀이매트	1㎡ 당	1,000
	297	보행기		2,000
	298	유모차	대형/디럭스	3,000
	299		휴대용	2,400
	300	유아용 목마		1,000
	301	유아용 안전문	1짝당	2,000
	302	카시트		2,000
	303	유아용 욕조		3,000
	304	유아용 미끄럼틀		5,000
	305	유아용 자동차		3,000
	306	유아용 그네		1,000
	307	트램블린		1,000
기타	308	파티션	1㎡ 당	2,000
	309	석고보드	1㎡ 당	2,000
	310	목재 파레트	1㎡ 당	2,000
	311	마네킹	1m 이상	5,000
	312		1m 미만	3,000
	313	타이어	지름 110cm 이상	11,000
	314		지름 60cm ~ 110cm	5,000
	315		지름 60cm 미만	3,000
	316	간판(입간판)	40cm × 100m 당	4,000
	317		가로 1m 이상	2,000
	318		가로 1m 미만	1,000
	319		고무통 입간판	5,000
	320	에어풍선		3,000
	321	화환		3,000
	322	방충망	1㎡ 당	2,000
	323	천막	길이 6m 이상	7,000
	324		길이 6m 미만	5,000
	325	폐소화기		면제
	326	폐태양광 패널(가정용)	180cm × 100cm 이하	7,000
	327	공기청정기 필터	모든규격	1,000
	328	폐목재	1kg 당	200
329	폐플라스틱	1kg 당	200	

- ※ 위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한다.
-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무상 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제9조제1항제5호 관련)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p>※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p>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p>※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p>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p>※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p>
다. 유리병	· 음료수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기타 병류	<p>하여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p>※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p>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p> <p>※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제출</p>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p>※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p> <p>※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최초 구매한 소매점 의뢰</p>
마.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바.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사.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칫솔, 완구·문구류, 옷걸이, CD·DVD,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아.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등은 종량제봉투에, 고무장갑, 장화 등은 특수규격마대에 장판, 돛자리 등은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자.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차. 의류 및 원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의류 · 기타 의류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솜이불, 수건, 걸레, 베개, 방석, 짝 없는 신발, 롤러스케이트,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 등
카.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전지류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타.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파.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하. 자동차부품	· 폐납산배터리	-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거.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폐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
겨.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기타 품목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의 [별표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의거 배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민원성 폐기물”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거나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반입이 규제되는 소량의 카페트, FRP, PVC, 페인트통, 페타이어, 장판, 고무호스, 폐합성수지, 폐비닐, 고무, 가죽 또는 <u>페스치로폴</u> 등의 폐기물로서 종량제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p> <p>7. ~ 9.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 ----- ----- ----- ----- ----- ----- ----- <u>페스티로폴</u> ----- ----- -----.</p> <p>7. ~ 9.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2(안전기준의 예외) 규칙 제16조의3제2항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주간작업의 예외</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u></p>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제13조에 따라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민원성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

--- 민원성폐기물, 재활용가능 자원-----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대형폐기물 : 배출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동장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일시·장소에 배출한다.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 ① 제13조에 따른

-----.

1.·2. (현행과 같음)

3. 대형폐기물 :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출 신고한 후, 신고한 일시·장소에 배출한다.

4. (현행과 같음)

5. 재활용가능자원 : 별표 7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품목·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

----. ----- 재
활용가능자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 ① -----

중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가정용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생략)

② (생략)

③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

1. -----

----- 재활용가능자원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배출 취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이 이미 수거 되었거나, 신고한 배출예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다.

④·⑤ (현행과 같음)